

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박 기 열 위원장님!

그리고 교통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새정치민주연합 양천구 제4선거구 출신 김 희 결 의원입니다.

이렇게 선배·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

「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
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현재 각 구청에 설치·운영되고 있는 “자전거교통안전
체험교육장”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체험장 시설 설치비만
일부 지원할뿐 운영비 등은 지원하지 않아 자치구
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.
- 따라서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
“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”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
책임을 명확히하고 자치구 재정부담을 완화시키고자

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.

□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

- 「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13조제1항에
시장은 “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·운영하는데
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”는 조항으로 개정하고자
하는 것입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장님!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!

- 본 개정조례안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운영비 부담
가중에 따른 자치구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발의한 것으로,
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